

[일련번호 : 50]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직접공사 시공 비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또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일부 제외)의 발주자는 직접 시공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직접 시공 대상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간 진행한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직접 시공 건설공사 준수여부 확인 및 보고 미이행 현황

연번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금액(천원)
1	신정네거리역 주변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2022.9.8.	2023. 5.16.	1,104,996
2	신월7동 오솔길공원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2023.4.6.	2023.10.16.	1,268,476
3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024.7.25.	공사중	4,171,977
4	신정2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2024.03.13.	2024.10.18.	1,129,700
5	신정3동 동일하이빌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2025.03.19.	2025.09.27.(예정)	752,395
6	신화중학교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2025.03.24	2025.11.07	765,710
7	서울과학수사연구소주변외 3개소 하수관로개량공사	2024.03.28.	2024.06.26.	1,344,728
8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공사(4차)	2022.11.15	2023.06.28	626,516
9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공사(5차)	2023.12.01	2024.05.30	786,900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공사 직접 시공 계획서 통보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및 국토교통부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